

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지 요건 안내

2010년 공중위생법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이 **2012년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본 법률과 규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주요 요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정보 안내서 시리즈가 마련되었습니다. NSW 보건부 웹사이트 (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본 법률과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레지오넬라 균 통제

2010년 공중 위생법 제31장 및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11조에 따라, 온수시스템이나 수냉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의 점유 거주자들은 반드시 현지 시 의회에 서면으로 이들 시스템의 존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통지용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의 공중위생규정 웹페이지(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의회에서 정한 \$100 미만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점유 거주자들이 해당 부지를 점유하기 전에 설치되었을 경우, 점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거주자가 점유한 후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설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 내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해당 점유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 점유 거주자의 이름 및 연락처(집 주소, 이메일 주소, 집, 직장 및 휴대전화 번호)
- 점유 거주자의 호주 사업자번호(ABN) 또는 호주 기업 번호(ACN) (해당할 경우)
- 규제 받는 시스템의 유형
- 지방 정부 당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한 검사 내역
1991년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스템의 존재를 현지 시 의회에 신고한 점유 거주자는 다시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점유 거주자는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현지 시 의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내역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영장 및 스파풀 규제

2010년 공중위생법 제 35(2)장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19조에 따라 공영 수영장이나 스파풀이 있는 장소의 점유 거주자들은 반드시 시 의회에 서면으로 이들 시설의 존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통지용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의 공중위생규정 웹페이지 (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시 의회에서 정한 \$100 미만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통지 내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해당 점유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 점유 주거자의 이름 및 연락처(집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집, 직장 그리고 휴대폰의 전화 번호)
- 점유 거주자의 호주 사업자번호(ABN) 또는 호주 기업 번호(ACN) (해당할 경우)

이러한 세부 내역이 변경될 경우, 점유 주거자는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현지 시 의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내역 신고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피부 투과 기술 규제

2010년 공중위생법 제 35(2)장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 31조에 따라, 피부 투과 기술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점유 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시 의회에 피부 투과 기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피부 투과 기술을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할 경우, 점유 거주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현지 시 의회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지 요건 안내

이를 위해 신고통지용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의 공중위생규정 웹페이지(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시 의회에서 정한 \$100 미만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통지 내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해당 점유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 점유 거주자의 이름 및 연락처(집 주소 및 집, 직장 그리고 휴대폰의 전화번호)
- 점유 거주자의 호주 사업자번호(ABN) 또는 호주 기업 번호(ACN) (해당할 경우)
- 해당 장소에서 시행되는 피부 투과 시술의 유형
- 피부 투과 시술이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점유 거주자가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곳의 지방정부 지역.

1991년 공중보건법에 따라 이러한 장소의 존재를 현지 시 의회에 신고한 점유 거주자는 다시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점유 거주자는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현지 시 의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내역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체 처리

2010년 공중위생법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에 따라 영안실과 화장터 등록부는 보건부 장관 관할 하에 유지됩니다.

영안실이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부에 등재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건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영안실이나 화장터의 주소와 전화번호
- 영안실이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 영안실이나 화장터의 전화번호, 또는 영안실이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 영안실의 경우 - 영안실을 이용하는 장의사의 이름 및 주소

이를 위해 신고통지용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의 공중위생규정 웹페이지(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안실이나 화장터 통지 시 통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91년 공중 위생법에 따라 이러한 장소의 존재를 보건부 장관에게 신고한 점유 거주자는 다시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건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보기

2010년 공중위생법 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업계 협회 문의
- 시 의회 문의
- 현지 공중보건소 문의
- NSW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환경보건 검색

<http://www.health.nsw.gov.au/publichealth/environment/index.asp>

- NSW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공중 위생법과 공중 위생 규정 검색

www.health.nsw.gov.au/phact